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변 호	2536
------------	------

2021. 09. 0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1. 7. 26. 이현찬 의원 발의 (2021. 8. 18. 회부)

2. 제안이유

- 광화문광장은 촛불집회, 6·10민주항쟁 등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으로 이를 기념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서 광화문광장 관리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이 광화문광장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광화문광장내에 전시관 및 동상과 부속조형물로 명확성과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3조 제4항).

4.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취지

- 이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현찬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2항 신설)
<신 설>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개정조례안은 촛불집회, 6·10민주항쟁, 세월호 기억공간 운영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깊은 광화문광장에 ‘세월호등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이하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기억,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전시관은 ‘14년 7월 14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 ‘19년 4월 전시관이 개관되었으며, 현재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따라 철거를 완료하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가설건축물을 설치·운영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본관 1층을 사용하고 있음(붙임-1 참고).

□ 광화문광장의 시설결정 및 관리·운영 현황

- 광화문광장(종로구 세종로 1-68일대)은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2년 도시계획시설(광장)로 최초 결정¹⁾된 이래 1997년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²⁾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유형 상 ‘일반광장(중심대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음(붙임-2 참고).
- 이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은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현재 일반광장이 도로와 일부 중복 결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에서 정의하는 광화문광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상의 일반광장과 차이를 보이게 됨³⁾(붙임-3 참고).
- 현재 광화문광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⁴⁾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균형발전본부(균형발전정책과 광화문관리팀)가 총괄부서로서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 및 조형물등의 이용 승인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절차를 거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허가기간 동

1) 내무부고시 제23호, 1952.3.25.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0호, 2019.8.8.

3) 결정조서상 일반광장의 면적(102,093.5㎡)은 도로와 중복 결정된 부분을 제외하면 줄어들게 됨.

4) 2009.5.28. 제정·시행, 서울특별시조례 제4800호.

안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할 수 있으나, 영구조형물인 동상과 부속조형물을 건립⁵⁾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⁶⁾’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현행 조례 제3조제3항).

□ 전시관 등 설치 관련 관계법령 검토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⁷⁾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부지⁸⁾에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음.

-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⁹⁾에 따라, 도시계획

5)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1968년에 건립된 이순신장군 동상과 2009년에 건립된 세종대왕 동상 등 총 2개의 영구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음.

6)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9.7.30. 제정) 제3조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7) 국토계획법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를 포함함

9)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붙임-4 참고).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광장’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설치하려는 시설(전시관등)이 광장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한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에게 추모사업 시행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이하 “세월호추모조례”)에서도 시장의 책무와 추모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9조¹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¹¹⁾

1.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

에서는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모시설(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령에 따라 협의·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구 분	국토계획법	세월호피해지원법
설 치 주 체	시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 치 대 상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추모시설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설 치 가 능 성	원칙적 금지, 단, 비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가능	국가등이 추모시설 조성계획(또는 건립계획) 작성하여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치면 설치 가능

□ 서울시 소관부서 입장

- 서울시 소관부서(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근거 규정 및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조성취지,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 등을 들어 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우선, 전시관의 설치하는 광장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

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성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61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인 전시관을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광장에 설치할 수 없으며,

- 또한, 전임시장 때부터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도심공원 및 보행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조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광화문광장 내 전시관과 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세월호 기념관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¹²⁾와 향후 또 다른 목적의 전시관 설치요구가 발생할 우려¹³⁾ 등을 들어 식수나 표지석의 설치 이외에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경각심 및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 등을 가져 온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

12)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이후 「세월호 기억공간」 재설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 재설치 필요 없음 51.4% > 재설치 필요 29.2% > 표지석 등 대체기념물 설치 15.6%

※ 여론조사 개요

- 조사기관: '21.7.14.(수) (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연구소)
-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 조사방법: ARS전화조사 (유·무선 RDD 유선 45%, 무선 55%)

13) 세월호 유가족협의회를 포함한 8개 기관과 개인(2인) 요구

편, 이를 교훈으로 삼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 서울시가 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지원·추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추모시설의 경우 광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특별법이 아닌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자율적으로 전시관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조례개정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향후 전시관 설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등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광화문광장의 조성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는 유족협의회 및 서울시의회¹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시관의 조성 장소와 규모, 방법 등을 모색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기계적 접근 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에 응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4) 참고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8.30. 서울시에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세월호 기억공간' 마련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세월호 기억공간 대안마련을 위한 TF'(단장: 이병도 의원)를 구성하였음.

TF는 이 조례의 개정을 포함하여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추모공간으로서 새로운 세월호 기억공간의 대안 모색을 촉구하기 위해 유가족-시민연대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끝으로, 조례 개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광화문광장의 조성목적,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 시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임경숙
연 락 처	02-2180-8205
이 메 일	kslinga@seoul.go.kr

【붙임-1】 세월호 기억공간 조성경위 및 설치·운영 현황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조성경위

- '14. 7.14. : 세월호 천막 최초 설치(세월호유가족협의회 설치)
- '19. 3.18. : 세월호 천막 철거(14개동)
- '19. 3월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광화문광장 사용허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19. 4.12. :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개관(동측차도, 교보생명 방향)
- '20.11.20. :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임시이전(서측차도, 현대해상 방향)
- '21. 4.18. :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운영종료
- '21. 8. 6. :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완료

□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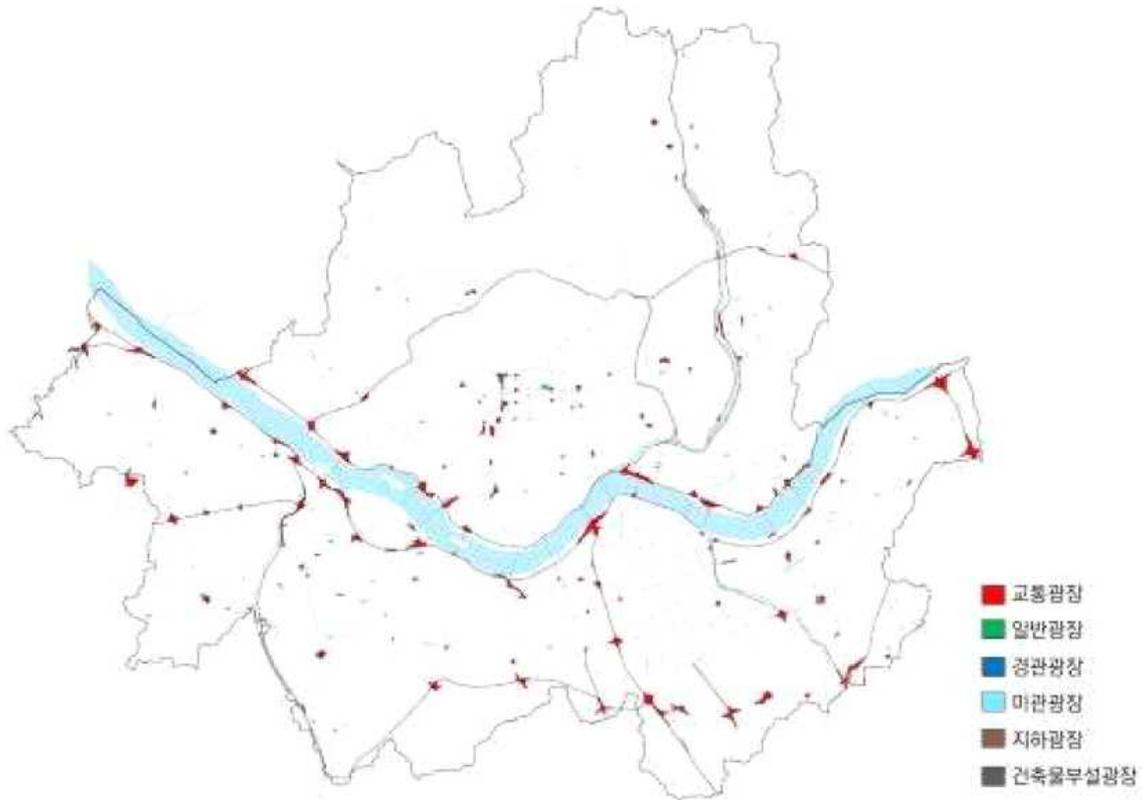
- 운영기간
 - '19. 4.12.(금) ~ '21.8.6.(금)
- 위 치
 - 광화문 남측광장(서측차도, 교보문고 건너편)
 - ※ '20.11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공사' 개시에 따라 임시이전(동측차도→서측차도 방향)
- 규 모
 - 지상1층 / 면적 79.98㎡
- 주요구성
 - 기획전시실, 영상상영실, 시민참여·안전교육공간



【붙임-2】 서울시내 도시계획시설(광장) 유형별 지정현황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관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2020, p.14, 2020.7.1.기준)

□ 유형별 위치도



□ 유형별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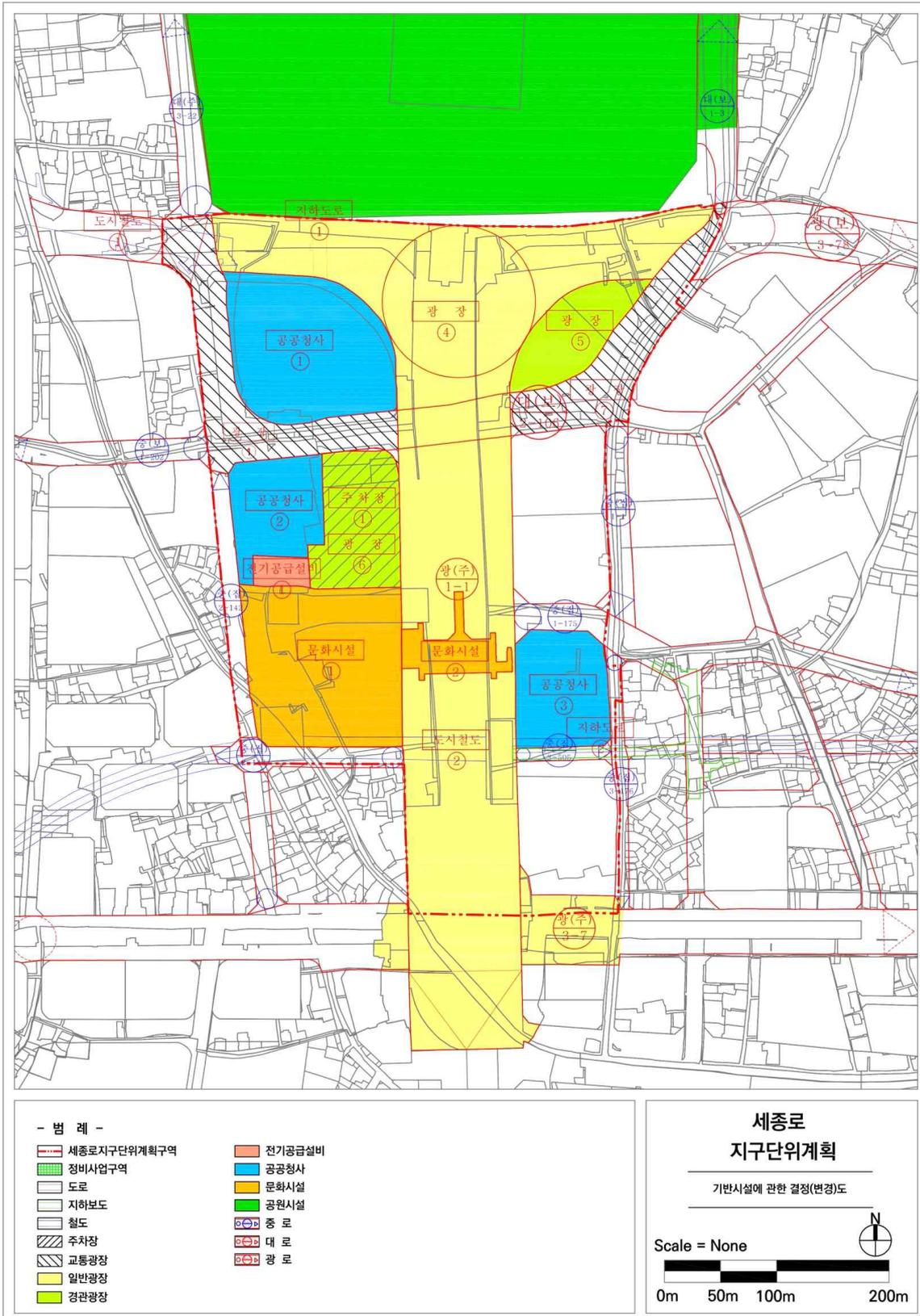
광장유형	개수(개)	비율(%)
교통광장	186	64
일반광장	61	21
경관광장	15	15
미관광장*	6	6
지하광장	2	2
건축물부설광장	1	1
미확인	21	21
계	292	100

(* 참고로, '미관광장'은 구)도시계획법시행령 상 교통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광장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2003년 도시계획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음.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보칙 제12조에서 미관광장은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광장 또는 경관광장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에도, 6개 광장은 여전히 미관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붙임-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및 광장 결정(변경)조서

(서고 제2019-260호,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9.8.8.)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광장	교통 광장	종로구 적선동 202-3 일대	25,900.8 (25,467)	감)13,425.7	12,475.1	내무부고시 제23호 ('52.3.25)	경복궁 앞 광장 ※ 중복결정 -도시철도① (1,316㎡) -광로2-106 (12,475.1㎡)
폐지	②	광장	교통 광장	종로구 세종로 77-6 일대	8,500.0	감)8,500.0	-	-	-
변경	④	광장	일반 광장	종로구 세종로	80,856.6 (62,923.2)	증)21,236.9	102,093.5 (94,821.5)	내무부고시 제23호 ('52.3.25)	광화문광장 ※ 중복결정 -광로1-1 (94,821.5㎡) -광로3-7 (1,604㎡) -광로2-106 (3,583㎡) -지하도로①(660㎡) -지하도로②(31㎡) -문화시설② (3,342㎡) -도시철도① (359㎡) -도시철도② (3,254㎡)
변경	⑤	광장	경관 광장	종로구 세종로 76-2 일대	9,494.6	감)2,954.4	6,540.2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44호 ('96.05.30)	의정부터
변경	⑥	광장	경관 광장	종로구 세종로 80-1 일대	8,855.3	감)86.6	8,768.7	서울특별시 고시 제26호 ('76.02.13)	세종로공원 ※ 중복결정 -주차장① (8,768.7㎡)
신설	⑦	광장	교통 광장	적선동 36-2 일대	-	증)10,206.5	10,206.5 (9,684.2)	-	※ 중복결정 -광로2-106 (10,206.5㎡)

【붙임-4】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광장)

① 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②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

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일반광장

가. 중심대광장

- (1)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 (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 (3) 일시에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나. 근린광장

- (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 (2) 시장·학교 등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3)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 (현행)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화문광장"이란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관리)

-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이 건립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등(이 경우는 "영구조형물"을 말한다)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제37조(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지원·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의결한다.

○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의식 함양을 위하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5조(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희생자 추모 행사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